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국무총리지시 제 12호

(720-4041)

1982. 5. 12

수신처 참조

제 목 수도권내 공공청사등 건축규제에 관한 지시

1. 수도권인 구재배치 기본계획의 추진에 관한 국무총리지시 제 3호 ('77.3.16) 및 국무총리지시 제 11호 ('77.10.2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수도권의 과밀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을 확정 시달하니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본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본 계획에 의거 규제되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의 사옥으로 1982. 5. 12.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을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은 후 추진토록 조치할 것.

3. 건설부장관은 동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내에서 행정기관 건축물의 신·증축을 계획 입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사전 협의할 것.

첨 부 :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나 1. 4. 5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기호	수도권 110-	(전화번호 720-4041)	전결규정	조항
처리기간		부위원장	국무총리(위원장)	
시행일자	1982. 4.			
보존년한				
보조기관	자관		협 조	
기획관				
담당관	담당관			
기안책임자	행정사무관	임승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통제	
제목				

(제 1 안)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 상정의안 심의조정

- 건설부장관이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수도권내 공공
정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 상정 심의 한바,
- 별첨 심의 요청안과 같이 의결 되었으므로 이를 국무총리지시

제3호 ('77. 3. 16)로 시달한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부록
관계부처에 시달코자 합니다. 끝.

(시행안)

국무총리지시 제 1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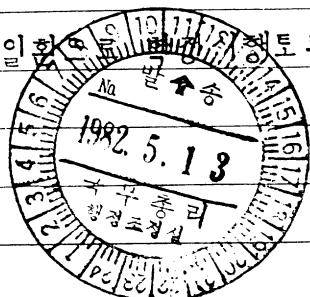
발신 : 국무총리

수신 및 수신처 참조

제목 : 수도권내 공공정사 등 건축 규제에 관한 지시

- 수도권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의 추진에 관한 국무총리지시 제3호

('77. 3. 16) 및 국무총리지시 제11호 ('77. 10. 2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서

판인

발송

190mm x 968mm

2. 수도권의 과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을 확정 시달하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본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본 계획에 의거 규제되는 정부청사 및 공공 기관의 사옥으로 '82. 4.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은 후 추진도록 조치 할 것

3. 건설부장관은 동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 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 할 것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에서 행정기관

건축물의 신·증축을 계획 입안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사전협의 할 것.

첨 부 :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1부. 끝.

수신처 : 가, 나 1, 2, 3

(제 2 안)

수 신 : 총무처장관

발신 : 행정조정실장

제 목 : 관보 계재 의뢰

별첨 국무총리지시 제 12 호 ('82. 5. 13.) 를 관보 계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무총리지시 제 12 호 1부. 끝.

2141 123

82. 5. 13

首都圈内公共廳舍 及 大規模建築物規制計劃

1982. 5.

建 設 部

1. 規制對象區域

가. 政府廳舍 및 公共廳舍

서울特別市, 仁川直轄市 및 京畿道全域

나. 教育施設 및 民間建築物

- 首都圈 8個市 9個郡 各一部로 하되 移轉促進

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으로 細分하여 差等規制

- 移轉促進地域 (2個市, 3個郡 各一部)

서울特別市, 議政府市

楊州郡: 白石面, 州內面, 長興面

高陽郡: 神道邑, 元堂邑, 碧蹄邑, 一山邑, 知道面

南楊州郡: 九里邑, 漢金邑, 瓦阜邑, 別內面, 棨接面,
眞乾面

- 制限整備地域 (6個市, 6個郡 各一部)

仁川直轄市, 水原市, 城南市, 安養市, 富川市, 光明市

金浦郡: 高村面, 桂陽面

楊平郡: 西宗面, 楊西面, 江下面

廣州郡: 廣州邑, 東部邑, 草月面, 退村面, 南終面, 中
部面, 西部面

始興郡: 蘇萊邑, 儀旺邑, 軍浦邑, 果川面, 秀岩面, 君

子面

龍仁郡：水枝面

華城郡：半月面

2. 規制内容

가. 政府廳舍

1) 原則 (禁止)

- 가) 行政府機關 廳舍의 新·增築
- 나) 立法院機關 廳舍의 新·增築
- 다) 司法院機關 廳舍의 新·增築
- 라) 地方自治團體 機關廳舍의 新·增築

2) 例 外

가) 地方自治團體를 除外한 政府廳舍의 地域單位機關等

① 中央機關의 次下級 地域單位機關과 國家施策上 不
得已한 機關廳舍의 新·增築으로서 首都圈問題審議
委員會의 審議調整받은 때 許容

② 中央機關의 次下級 地域單位機關에 所屬하는 地域
單位機關廳舍의 新·增築 許容

나) 地方自治團體機關廳舍로서 首都圈問題審議委員會의
審議調整을 받은 때와 邑面洞 및 支派出所 廳舍는 許容

다) 軍用廳舍는 規制對象에서 除外

나. 公共廳舍

1) 原則 (禁止)

가) 政府投資機關管理法에 依한 政府投資機關 本社 社
屋의 新·增築

나) 特別法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本社 事務所의 新·
增築

다) 國有財產 現物出資에 關한 法律에 依한 政府
出資企業體 本社 社屋의 新·增築

라) 法律에 依하여 政府支援을 받는 法人廳舍의
新·增築

2) 例外：金融，保險，證券，貿易，觀光，體育，言論，
通信，保健衛生機關으로서 首都圈問題審議委
員會의 審議調整을 받은때는 許容

다. 教育施設

1) 移轉促進地域內

가) 原則(禁止)

- o 大學의 新·增築
- o 專門大學의 新·增築
- o 서울都心 8 km 以內 高校의 新·增築
- o 서울江北地域 私設講習所 新·增築

나) 例 外

既存 定員收容을 為한 教育施設로서 首都圈問
題審議委員會의 審議調整을 받은때 許容

2) 制限整備地域內

가) 移轉促進地域內에서 禁止된 教育施設로서 首都
圈問題審議委員會의 審議調整을 받은때 許容

나) 移轉促進地域內에서 首都圈問題審議委員會 審議
對象 教育施設은 許容

2. 移轉促進地域內 民間建築物

1) 原則(禁止)

- o 21層以上인 事務所用 建築物의 新·增築
- o 11層以上인 販賣施設用 建築物의 新·增築

2) 例 外

都市再開發計劃, 都市設計 및 特定街區整備計劃에
依한 建築物로서 首都圈問題審議委員會의 審議調
整을 받은 때 許容

3. 規制方案

建築法(第44條)에 依한 建築許可制限區域으로 指
定 統制

4. 經過措置

- 가. 政府廳舍·公共機關建物로서 工事中인 建築物은 首
都圈問題審議委員會의 審議調整後 推進
- 나. 教育施設 및 大規模建築物로서 本調整計劃 確定以
前에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은 繼續施行